<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 불공정행위 조사의 허와 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 연합회 및 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999년 6-7월 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일제 조사한다고 한다.

특히, 사업자단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외국계 사업자들이 단체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겪고 있는 사업활동 불편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바로잡겠다고 한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국내사업자 500개 및 외국계 사업자 200개 등으로 국내사업자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32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중 500개를, 외국계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주한 각국 상공회의소의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설문조사 실시 배경으로 다음 2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 신고위주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를 적발 · 시정했으나 신고사례가 실제 발생행태 중 일부에 불과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정조치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외국계 사업자들이 한국정부가 신규투자 유치에만 관심을 갖고 이후에는 관심이 없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해 느끼는 규제 또는 경쟁제한행태의 발굴 · 시정이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외국계 사업자가 사업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사업자에게는 부당한 사업활동제한 여부 및 내용, 자율조정 및 과당경쟁방지 등의 명목아래 법적 근거도 없이 담합행위 등을 주도하는지의 여부 및 내용, 가입비 및 부담이 커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항,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하는 각종 진입제한 등 규제내용을 조사한다.

반면, 외국계 사업자에게는 국내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으로 취급받는 사항, 사업자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또는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 사업자단체에 가입을 희망하지만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 사업자단체 가입 · 탈퇴 및 활동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한마디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담합행위의 조사 · 시정에는 관심이 없고, 국내 사업자단체들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기업 및 신규진입 사업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허다해 법적 ·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절대 필요하다. 외국계 사업자에게는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 자격만 주고, 과다한 가입비를 요구하며, 협회에 영업비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이라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아무런 대가없이 손쉽게 국내시장 장악에 나서겠다는 것도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다. 메마른 토양에 씨를 뿌리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공로를 무작정 무시할수는 없는 노릇이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기는 외국기업들도 국내기업 못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BASF와 Roche의 비타민 담합행위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비타민제품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로 인해 미국정부로부터 7억2500만달러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EU에서도 이들의 담합행위를 조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외국계 사업자의 차별행위로 적시한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의 성분자료정보 보호장치 미흡도 문제이다. 수입 화학물질에 새로운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분내역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중요한 영업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는 일반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으나, OECD에서 자가검사(Self-Certification) 만으로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 척결과 함께 외국기업들의 담합행위도 함께 조사해 공평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1999/6/28>